

- 道 주거복지 정책 추진 관련 -

2024년도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고

◆ 주거취약계층·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24년도 道 주택개조사업(4건)* 추진계획 보고임.
 * 햇살하우징, G-하우징, 장애인(구 농어촌),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추진근거

- 「주거기본법」 제16조(주거약자 지원),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주택개조비용 지원)
- 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 제3조(도지사의 책무)·제22조(주택개조사업 시행)

○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
○ 사업량 : 868호(4건) …… 사업별 세부계획 [붙임]참고

○ 사업비 : 34.5억원(예산사업 3건/728호, 비예산 1건/140호)

○ 추진방식 : 공공기관(GH) 위탁, 민간 및 시·군 직접

사업명	2024년 추진 주택개조사업			
	햇살하우징	G-하우징	장애인(구 농어촌) 주택개조사업	어르신 안전 하우징(공약)
대상	중위소득 50% 이하	중위소득 70% 이하 및 복지시설	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	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
사업량(호) ※()전년도 목표/실적	296 (296/296)	140 (140/104)	182 (182/166)	250 (200/200)
사업비 (백만원) ※()전년도예산	1,480 (도비100%) (1,480)	비예산	691.6 (국비50%, 시군비50%) (691.6)	1,275 (도비100%) (1,020)
추진방식	공공 위탁(GH)	민간 직접	시·군 직접	공공 위탁(GH)
사업내용	난방비·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(냉·난방기 교체 등)	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을 통한 집수리	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맞춤형 개선	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

□ '24년 변경 및 개선사항

- (변경사항) '23년 시행한 道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미실시
 -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'장애인 주택개조사업' 대상이 확대 ('22년 36호 → '23년 182호) 시행됨에 따라 道 사업(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/'23년 120호) 대체 가능
 - '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비 대상자('24년 이월 대상자)가 타 주택개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등 시·군의 조치 필요

«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개요('23년) »

- 추진근거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」 제15조, 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 제22조(주택개조사업 시행)
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70%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- 지원내용 :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* 및 주거환경개선**
 - * 출입문(손잡이, 문턱), 바닥, 욕실, 부엌(싱크대)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개보수
 - ** 도배, 장판, 간단수리, 청소 등
- 사업량/사업비 : 120호(호당 500만원) / 6억원(道 주거복지기금 100%)
- 시행방법 : 공공 위탁(GH)
- 추진실적

구분	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호수	859	57	100	112	125	165	180	120

- (개선사항) 예비자 명단 확보 및 사업 소요기간 단축
 - 사업대상자의 변심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어려움 → 신청접수 시 예비명단(선정 가구수의 30%) 포함하여 신청명단 확보
 - ※ 사업 대상자가 선정 취소될 경우 해당 시군 예비자 명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, 예비자 명단이 없을 경우 타 시군 예비자 명단에서 선정함.
 - 대상자 접수 ~ 공사완료 기간 수개월 소요로 민원 발생 → 1분기 내 신청명단 확정 및 보조금 교부를 통하여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단축, 동절기 전 공사완료로 사업수혜자 편의성 제고

□ 추진일정

-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(道 → GH, 시·군) …………… '24. 1월
-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(시·군 → 道 → GH) …… '24. 1~3월
 - ※ G-하우징·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사전 준비 완료 시 우선 착공
- 실태조사 및 공사 진행(GH) …………… '24. 4~11월
- 결과보고 및 정산(GH → 道) …………… '24. 12월~ '25. 1월
 - ※ 참고자료 별첨(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각 1부)

□ 향후계획

- '24년 사업추진계획 통보(道 → GH, 시·군) 및 사업신청 접수
- '24년 사업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('24. 1월)

□ 행정사항

- (시·군) '24년 사업 신청자 접수 시 소득기준 및 수선유지 급여 대상 여부 확인
- (시·군) '24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미실시에 따라 동 사업의 예비 대상자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으로 연계
- (시·군) '23년 예비('24년 이월) 대상자를 신청자 명단 제출 시 우선순위로 두되, 이월자도 신청서류 접수·제출
- (GH) '23년 사업 수혜자에게 하자보수기간(1년) 등 하자 관리사항 안내

- 붙임 1. 소득기준 1부.
2. 연도별 추진 실적 1부.
3. 시·군별 사업 배정량 각 1부.
4. 지역별 지원현황 각 1부.
5. 세부 추진 절차 1부.
6. 관련 법령 1부.
7. 사업 신청서 서식 등 각 1부. 끝.

참고

사업별 세부계획

I

햇살하우징

- 법적근거 : 「주거기본법」 제16조, 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 제3조
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도 내 31개 시·군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 - ※ 기타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(임대인 동의 必))
- 사업제외대상
 -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), 햇살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, G-하우징(500만원 이상) 등 道 주택 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
- 선정방법 : 시군별 배정량 및 소득수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
 - ※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30%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수혜 불가 시 다음 해 이월 후 우선 지원
- 사업량 : 296호
- 사업비 : 1,480백만원(도비 100%)
 - 호당 사업비는 500만원(공사비 등 포함) 이내이며, 주택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道-수행기관 간 협의 후 호당 사업비의 150% 범위 내 집행 가능
- 사업내용 : 난방비·전기료 절감을 위한 주거 내 에너지 효율화
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·문으로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보일러 교체
 - (전기료)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
 - (냉·난방기 설치·교체)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
 - ※ 기타 도배, 장판, 싱크대, 화장실, 백색도기류,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
 - ※ 지붕·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
- 사업시행 : 경기주택도시공사

□ 추진일정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(道) : '24. 1월
-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(시·군 → 道) : '24. 1월~3월
- 에너지 효율진단 및 실태조사(GH) : '24. 4월~6월
- 공사 시행(GH) : '24. 6월~11월
-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(GH → 道) : '24. 12월~ '25. 1월

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 또는 복지시설
 - ※ 기타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포함
 - ※ 임차인 지원 가능(단, 임대인 동의 必)
- 사업제외대상
 - 햇살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, G-하우징(500만원 이상) 등 道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
- 사업량 : 약 140호
- 사업비 : 비예산
- 사업내용 :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
 - (유형 ①) 참여 업체가 개보수 용역 발주
 - (유형 ②) 재능·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공사 시행
 - (유형 ③) 복지기관에 기부 후, 복지기관에서 공사 시행
- 참여기관 : GH,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민간단체, 건설회사 등
- 추진일정
 - 사업 추진계획 수립(道) : '24. 1월
 - 참여업체 파악(道, 시·군 등) : '24. 1월 ~
 - 지원대상 파악(시·군 등) : '24. 1월 ~ 3월
 - 지원대상 현지조사(시·군, 참여업체) : '24. 3월
 - 공사 시행(참여업체) : '24. 4월 ~ 12월

III

장애인^[구 농어촌] 주택개조사업

- 법적근거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
- 사업제외대상
 - 국가·지자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
 - ※ 다만, 지원내용(항목)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
- 사업량 : 182호

< 시·군별 배정 물량 >									
(단위 : 호)									
시·군	물량	시·군	물량	시·군	물량	시·군	물량	시·군	물량
수원시	14	안산시	13	의정부시	7	오산시	3	양평군	3
용인시	11	평택시	10	광주시	7	이천시	5	여주시	3
고양시	12	안양시	6	하남시	3	안성시	4	동두천시	5
화성시	12	시흥시	7	광명시	4	구리시	3	과천시	-
성남시	11	파주시	7	군포시	5	의왕시	-	가평군	2
부천시	-	김포시	6	양주시	4	포천시	3	연천군	2
남양주시	10	※ 시·군 수요조사 및 국토교통부 확정내시 반영							

- 사업비 : 136.8백만원(국비 50% : 시군비 50%)
- 사업내용 :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 지원
 - 주택 내의 편의시설·안전장치(출입문·호출장치 등)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·경사로 보수·설치,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등 포함
 - ※ '23년 『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』 참고
- 추진일정
 - 업무처리지침 통보(국토교통부 → 道 → 시·군) : '24. 3월
 - 시·군 계획수립 및 대상가구 선정(시·군) : '24. 4월 ~ 5월
 - 시·군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시행(시·군) : '24. 6월 ~ 11월
 - 사업 결과 보고(시·군 → 道 → 국토교통부) : '24. 12월
 - 정산·결산서 제출(시·군 → 道 → 국토교통부) : '25. 1월

IV

어르신 안전 하우징(공약사업)

□ 추진근거

- 민선 8기 공약사업(138번,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) 및 관계법령*

*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「주거기본법」 제5조, 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 제3조 및 제22조

□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(단년도 계속사업)

□ 사업내용 : 안전사고 위해요인 개선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전성 제고

- (안전시설 보강) 미끄럼방지 패드·가드레일 부착, 손잡이·경사로 설치 등
- (주거환경 개선) 문턱 제거, 실내 조도 개선 등

□ 사업시행 : 경기주택도시공사

□ 사업대상 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
□ 사업제외대상

-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), 햇살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, G-하우징(500만원 이상) 등 도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

□ 선정방법 : 시군별 배정량 및 소득수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

※ 대상자 중도 취소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30%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수혜 불가 시 다음 해 이월 후 우선 지원

□ 사업량 : 250호

□ 총사업비 : 1,275백만원(도비 100%)

- 호당 사업비는 500만원(공사비 등 포함) 이내이며, 주택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-수행기관 간 협의 후 호당 사업비의 150% 범위 내 집행 가능

< 향후 사업량/사업비 계획 >

구분	합계	'23년(전년도)	'24년	'25년	'26년
사업량(호)	1,100	200	250	300	350
사업비(백만원)	5,610	1,020	1,275	1,530	1,785

□ 추진일정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(道) : '24. 1월
- 사업신청자 접수 및 확정(시·군 → 道 → GH) : '24. 1월 ~ 3월
- 현지조사 및 공사 진행(GH) : '24. 4월 ~ 11월
-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(GH → 道) : '24. 12월 ~ '25. 1월

붙임 1

- ① '24년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액 및 중위소득
- ② '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

<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액 >

(단위 : 원)

구 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2024년	2,130,000	3,408,000
2023년	2,020,000	3,232,000
(변동분)	+110,000	+176,000

<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>

(단위 : 원)

가구원 수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'23년	100% (기준 중위소득)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	70%	1,454,524	2,419,309	3,104,371	3,780,675	4,431,482	5,059,587	5,675,261
	50%	1,038,946	1,728,078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	4,053,758
'24년	100% (기준 중위소득)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	70%	1,559,912	2,577,826	3,300,260	4,010,940	4,687,015	5,332,858	5,960,496
	50%	1,114,223	1,841,305	2,357,329	2,864,957	3,347,868	3,809,185	4,257,497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(2023. 8. 16.)]

<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>

(단위 : 원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2023년	3,353,884	5,005,376	6,718,198	7,622,056	8,040,492
2022년	3,212,113	4,844,370	6,418,566	7,200,809	7,326,072
(변동분)	+141,771	+161,006	+299,632	+421,247	+714,420

※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661,147원) 합산 산정
 [출처 : 통계청('23. 2. 23.) ※ 2024년 기준 자료는 추후 고지 시 반영 예정]

○ 道 기초연금 수급인원 비례 시·군별 배정계획(안)

(출처 :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('23년 12월 기준), 단위 : 명, %, 호)

연번	시·군	道 기초연금 수급자		시·군별 배정계획(안)			
		수급자 수	배정 비율	합계	선정 가구수	예비 가구수 ¹⁾	전년도 이월 ²⁾
	계	1,308,102	100	325	250	75	3
1	수원시	96,933	7.4	24	19	5	-
2	용인시	80,488	6.2	20	15	5	-
3	고양시	105,094	8.0	26	20	6	-
4	화성시	59,196	4.5	15	11	4	-
5	성남시	75,239	5.8	19	14	5	1
6	부천시	91,737	7.0	23	18	5	-
7	남양주시	81,630	6.2	20	16	4	2
8	안산시	57,518	4.4	14	11	3	-
9	평택시	49,490	3.8	12	9	3	-
10	안양시	52,161	4.0	13	10	3	-
11	시흥시	42,428	3.2	11	8	3	-
12	파주시	53,605	4.1	13	10	3	-
13	김포시	43,864	3.4	11	8	3	-
14	의정부시	58,538	4.5	15	11	4	-
15	광주시	41,641	3.2	10	8	2	-
16	하남시	25,425	1.9	6	5	1	-
17	광명시	27,674	2.1	7	5	2	-
18	군포시	26,488	2.0	7	5	2	-
19	양주시	32,737	2.5	8	6	2	-
20	오산시	18,200	1.4	4	3	2	-
21	이천시	24,461	1.9	6	5	1	-
22	안성시	24,937	1.9	6	5	1	-
23	구리시	18,995	1.5	5	4	1	-
24	의왕시	14,333	1.1	4	3	-	-
25	포천시	23,987	1.8	6	5	1	-
26	양평군	20,678	1.6	5	4	1	-
27	여주시	19,401	1.5	5	4	1	-
28	동두천시	16,825	1.3	4	3	1	-
29	과천시	3,231	0.2	1	1	-	-
30	가평군	12,051	0.9	3	2	1	-
31	연천군	9,117	0.7	2	2	-	-

※ 시·군 담당자 및 수행기관 의견 반영하여 배정 가구수 조정 가능

※ 수혜자 선정 후 취소자 발생 시 배정 가구수 변동 가능성 있음

1) 선정 가구수(250명)*30%

2) '23년도 사업 대상자 중 예비 명단

○ 道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례 시·군별 배정계획(안)

(출처 :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('23년 12월 기준). 단위 : 호, %, 호)

연번	시·군	道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		시·군별 배정계획(안)			
		가구수	배정 비율	계	선정 가구수	예비 가구수 ³⁾	전년도 이월 ⁴⁾
	계	346,585	100	385	296	89	46
1	수원시	23,353	6.7	26	20	6	4
2	용인시	14,959	4.3	17	13	4	-
3	고양시	27,469	7.9	30	23	7	-
4	화성시	13,593	3.9	15	12	3	-
5	성남시	24,573	7.1	27	21	6	-
6	부천시	22,622	6.5	25	19	6	-
7	남양주시	19,413	5.6	21	16	5	-
8	안산시	23,386	6.7	26	20	6	-
9	평택시	13,928	4.0	15	12	3	-
10	안양시	11,461	3.3	13	10	3	14
11	시흥시	13,525	3.9	15	12	3	2
12	파주시	16,370	4.7	18	14	4	13
13	김포시	10,850	3.1	12	9	3	-
14	의정부시	18,432	5.3	20	16	4	7
15	광주시	7,390	2.1	8	6	2	1
16	하남시	6,014	1.7	7	5	2	2
17	광명시	6,689	1.9	7	6	1	-
18	군포시	7,886	2.3	9	7	2	-
19	양주시	9,869	2.8	11	8	3	3
20	오산시	5,324	1.5	6	5	1	-
21	이천시	5,515	1.6	6	5	1	-
22	안성시	6,028	1.7	7	5	2	-
23	구리시	5,979	1.7	7	5	2	-
24	의왕시	2,880	0.8	3	2	1	-
25	포천시	6,877	2.0	8	6	2	-
26	양평군	4,518	1.3	5	4	1	-
27	여주시	4,980	1.4	6	4	2	-
28	동두천시	6,059	1.7	7	5	2	-
29	과천시	800	0.2	1	1	-	-
30	가평군	3,550	1.0	4	3	1	-
31	연천군	2,293	0.7	3	2	1	-

※ 시·군 담당자 및 수행기관 의견 반영하여 배정 가구수 조정 가능

※ 수혜자 선정 후 취소자 발생 시 배정 가구수 변동 가능성 있음

3) 선정 가구수(296명)*30%

4) '23년도 사업 대상자 중 예비 명단

어르신 안전 하우징

추진 절차	추진 기간	추진 내용	계획
계획수립 (道)	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수립 	
↓			
대상자 선정 (道, 시·군)	1~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대상가구 조사 및 신청 (시·군 등 → 道) 사업대상가구 통보 (道 → GH) 시공사 선정(GH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관 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실 수요자 적극 발굴 대상자 조사 시 사업 취지, 공사 범위 등 충분한 안내 통합사례관리사 및 온라인 신청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 활용 사업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절차 이행 철저 대상자 기본정보 면밀한 확인
↓			
현지조사, 공사 (GH)	4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요조사, 공사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 문의 등 신속 대응을 위해 연락망 구축 ※ 道-시·군-GH-시공사-대상자
↓			
결과보고, 정산 (GH)	12~ 익년도 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과 보고 및 정산(GH → 道) 만족도 조사 및 사용실태조사 결과 적극 반영하여 익년 사업추진 	

햇살하우징

추진 절차	추진 기간	추진 내용	계 획
계획수립 (道)	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예산 확보 • 사업계획 수립 	
↓			
대상자 파악 (道, 시·군, 유관기관 등)	1~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공자 선정(GH) • 사업대상 가구 조사 및 신청 (시·군 등 → 道) • 사업대상가구 통보 (道 → GH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관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실 수요자 적극 발굴 • 대상자 조사 시 사업 취지, 공사 범위 등 충분한 안내 • 통합사례관리사 및 온라인 등을 활용한 신청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 활용 • 사업대상자 소득 기준 확인 절차 이행 철저 • 대상자 기본정보 면밀한 확인 • 타 주택개조사업 신청자 제외
↓			
에너지효율진단 및 실태조사 (GH)	4~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너지효율진단 • 실태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너지 효율진단(표본조사) 및 전세대 실태 조사(공사 항목, 공사비 등) 실시 •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 될 경우, G-하우징으로 전환 추진
↓			
공사시행 (GH)	6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문의 등 신속 대응을 위해 道, 시·군, GH, 시공사, 사업대상자 연락망 구축
↓			
결과보고 (GH)	12월~ 익년도 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과보고 및 정산 (GH → 道) 	

G-하우징

○ 참여업체 파악 : 道, 시·군

- ▷ '23년 미 참여 15개 시·군*에 전향적인 사업 참여 유도
* 수원, 화성, 성남, 안산, 안양, 김포, 의정부, 군포, 양주, 의왕, 양평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
- ▷ 민간업체의 자율적 봉사 및 기부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, 자료요구 등 과도한 규제 및 관리·감독, 참여 독려 지양
- ▷ 연초 지원대상 확정 후,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참여 업체 추가모집
- ▷ 경기주택도시공사 누적 사업량

구 분	~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비고
지원(호)	41	6	9	35	45	105	72	73	75	

○ 지원대상 파악 : 시·군, 복지부서 협조

- ▷ 지원대상을 자가주택 소유자로 제한할 경우 세입자 등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,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지원 대상에 임차인(주택소유자 동의), 복지시설도 추가 가능
- ▷ 주거복지센터, 복지·도시재생 등 유관부서, 아동, 고령자 복지 등 유관기관, 시·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실수요자 적극 발굴
- ▷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문신청 외에 통합사례 관리사를 통한 신청, 온라인 신청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 활용
- ▷ 무리한 공사요구 방지 위해 대상자 조사 시 사업취지, 공사범위 등 충분한 안내
- ▷ (GH, 대한주택건설협회 등) 햇살하우징 사업 지원대상 중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, G-하우징으로 전환 추진

○ 공사 시행 : 시·군, 참여업체

- ▷ 대상 선정 보고(시·군 → 道) 후 참여업체와 협력하여 공사 시행
- ▷ 참여업체 지원 규모가 작은 경우 1가구에 여러 업체 협력 지원
- ▷ 참여업체가 기부금 처리를 요청할 경우, 적극 협조
- ▷ 연간 사업 완료 후 추진 결과 제출(시·군 → 道)
- ▷ 시장·군수 표창 및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한 참여 유도 및 확대